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2

발의연월일: 2024. 6. 20.

발 의 자:이인선・김종양・김기현

김성원 • 이철규 • 주호영

구자근 • 정동만 • 이종배

박성민 · 김소희 · 박형수

최형두 · 김상욱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 원전의 적기 계통 접속,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발전력 수용 등 국가에너지 믹스의 이행을 위해서는 전력망의 대폭 확충이 필요한 상 황임.

핵심 기간망 구축지연시 발전소 가동제한 등으로 인한 전력수급 불 안정 증대 및 사업자들의 수익악화로 전력산업 생태계 위축이 전망되 며, 또한 24시간 안정적 전력공급이 필요한 철강·석유화학 등의 국내 핵심제품 생산지에 계통불안정으로 정전발생시 최소 수십억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등 전력산업 생태계 및 국가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됨.

이에 국가·경제·안보 및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전력망적기 구축을 위해 ①국가기간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

원체계를 구축하고, ②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며, ③현행 타 법들과 차별화된 보상·지원 제도를 통해 국민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정책적·제도적으로 전방위적인 지원이 가능한 특별법안이 '24. 06. 05. 김성원 의원 대표로 발의된 바 있음.

기 발의된 특별법안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의 문안 및 체계를 정비하고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등 일부 추 가적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부문 탄소중립 이행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하여 전 기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송·변전설비"란 송전탑, 송전선로, 변전소 등 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2.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주요 송전・변전설비계획에 포함된 34만 5천볼트 이상인 송
 · 변전설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중 이 법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받은 설비를 말한다.
 -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변전설비
 - 나.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자력을 사용하여 생산

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 · 변전설비

- 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변전설비
- 3.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국가 기간 전력망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과 이와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 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시행자) 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 전사업자가 시행한다.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확충 과 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전원개발촉진법」을 따른다.

제2장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 제6조(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①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이하 "전력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전력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지정에 관한 사항
 - 2.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변경에 관한 사항
 - 3. 제15조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사항
 - 4. 개발사업과 관련한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 5. 개발사업과 관련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 6.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전력망위원회 위원장이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력망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사항 중 제1호 및 제2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따라 심의·의결된 사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고시 또는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전력망위원회 구성·운영) ① 전력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 1. 당연직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위촉위원: 에너지·자원, 환경·해양환경, 산림, 수산업, 국토이용, 과학·기술, 갈등조정, 전력설비 개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또는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 ② 전력망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전력망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 기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확충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 다)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망위원회 및 실

무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개발사업 실시계획

- 제8조(기초조사) ① 사업시행자는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해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에 따라 선정된 입지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개요
 - 2.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구역(이하 "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의 위치 및 면적
 -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4. 개발사업의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 5.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와 관련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 6.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개발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 2.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협의에 필요한 서 류
- 3. 제11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인허가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제출 하는 서류
- 4.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의 피해보상에 관한 서류
-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 어업권, 양식업권(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보상이나 매수계획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6. 그 밖에 개발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

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력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실시계획 중 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력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의견요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협의에 관한 의견을 말한다)을회신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⑥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 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 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실시계획의 수립, 신청 및 승인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실시계획의 공고·열람 및 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사업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열람기간 내에 설명회를 통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 2. 국방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실시계획의 사업면적 또는 선로의 길이가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주민등의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신고·지정 또는 결정·면허·협의·동의·해제·심의·등록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조제7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에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2.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 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 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

- 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 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7.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 수도 설치의 인가
- 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 9.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
-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 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 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 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1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 13.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 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 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

- 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 1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 1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 1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 19.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 2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 21.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 22.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23. 「습지보전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승인
- 24.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 치·관리의 허가 또는 신고
- 2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를 위한 사전협의
- 2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 2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 2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 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등
- 29.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 30.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 3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3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33.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 3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 ②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제9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거나 의견청취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제9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장 개발사업 인허가 특례

- 제12조(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선정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전 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의 자료 요구 및 협조 요청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입지선정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의 개발사업과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할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시설의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사업시행자가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반대, 관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등의 사유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에 따른 기간 내 에 입지선정이 곤란 또는 사업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보고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입지선정과정에서 발생한 갈 등 조정 중재 및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에 대하여 평가서의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평가협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이내에 통보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또는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1회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③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을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 2회 이하로 조사할 수 있다.

- 제14조(「자연재해대책법」의 적용 특례)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4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 협의만을 실시한다.
 - ②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20일 이내에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이내에 통보가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의 보완·조정 요청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다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이 아니거나 협의시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다.
- 제15조(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사업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이후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건축물의 설치, 작업장, 진입로 등의 사용구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허가에 대한 협의·승인·인가·허가 등(이하 이 장에서 "개발행위인허가등"이라한다)이 지연되어 개발사업의 적기 확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개발행위인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력망위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발행위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장(이하 이 장에서 "인·허가권자"라 한다)에게 개발행위인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인·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발행위인허가등을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허가권자는 개발행위인허가등의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 ④ 인·허가권자가 제3항의 회신기간 내에 개발행위인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에 개발행위인허가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 ⑤ 그 밖에 개발행위인허가등의 특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지원 · 보상에 관한 특례

제16조(토지등의 사용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성립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보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전을 토지대금에 가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보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전을 토지소 유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분할지급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제17조(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① 토지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매수의 청구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인 경우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한 토지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적용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매수청구 방법, 매수가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주택소유자, 토지소유자 및 개발사업 지역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9조(토지보상 협의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수용 업무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도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위 탁할 수 있다.
- 제20조(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① 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등의 소유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1.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 2.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원활한 사업참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1.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출자 시 투자 및 융자 지원
- 2.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그 밖에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토지등의 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 포함된 토지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1. 지방자치단체
 - 2.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시 업무범위,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는 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에 주민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 제23조(보안관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구역과 관련한 미공개정보(자산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 1. 산업통상자원부
 - 2. 제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 3. 제7조에 따라 전력망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 4. 제9조에 따라 협의하는 관계 행정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
- 제24조(정보공개) 사업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정 보를 개발사업구역의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25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 는 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26조(권리·의무의 승계) 개발사업구역의 토지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권리자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이 법에 따라 종전의 권리자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정조치는 변경된 권리자등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 2. 제7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제7장 벌칙

- 제29조(벌칙) ① 제23조를 위반하여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구역에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

- 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및 제2항 위반으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제30조(과태료) 제8조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 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에 따라 입지선정을 진행중인 사업이 이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본다.